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3. 전진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3.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3.10.)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진숙 의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 4.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여전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 미흡으로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송화로 인한 장기간 분쟁,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환자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의료분쟁 당사자간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화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추가로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책임을 제한하여,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보다 전문적인 수사 지원 등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심의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없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의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를 정
의하면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를 판단하게 하는 한
편,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
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